

○委員長 朴尙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.

續開를 宣布합니다.

(議事棒 3打)

企劃管理室長님 그리고 關係公務員 여러분 停會時間이 약속된 時間보다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. 會議의 能率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一括上程을 했습니다만 項目別로 일단 案件을 처리할 생각입니다. 委員 여러분 6項에 이것은 改正條例案입니다. 改正條例案에 대해서는 異議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. 서울特別市建設技術審議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해서 異議가 없으십니까? 한件 한件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

(「거꾸로 밑에서부터 올라옵니까」하는 委員 있음)

改正條例案은 일단 通過시켜 놓고, 制定條例案을 일단 質疑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. 異議가 없으시지요?

(「네」하는 委員 있음)

감사합니다. 通過된 것을 宣布합니다.

(議事棒 3打)

(參 照)

서울特別市建設技術審議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

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제2호중 “예산회계법시행령 제95조의3 제3항”을 “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제5항으로 한다.”

附 則

이 條例는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.

○委員長 朴尙東 그리고 서울特別市豫算編成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해서 異議가 없으십니까?

(「네」하는 委員 있음)

네, 可決된 것을 宣布합니다.

(議事棒 3打)

(參 照)

서울特別市豫算編成條例改正條例案

서울特別市豫算編成條例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.

서울特別市豫算編成條例

第1條(目的)이條例는 地方自治法第118條 및 地方財政法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서울特別市豫算編成, 審議確定에 관한 節次를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.

第2條(豫算編成指針) 서울特別市長(以下 “市長”이라 한다)은 內務部長官이 示達하는 翌年度 豫算編成指針에 依據 每 前年度 9月 10日까지 豫算要求機關에 細部豫算編成指針을 示達하여야 한다.

第3條(豫算의 要求 및 編成)①서울特別市 本廳 各 局長 및 事業所長은 每 前年度 9月 30日까지 所管別 歲入歲出豫算要求書를 다음 各 號의 書類를 添附하여 豫算編成機關에 提出하여야 한다.

1. 事業計劃書

가. 基本計劃書

나. 所要資金 및 年度別 財源調達計劃

다. 事業의 效果 分析

2. 事業別 優先順位 策定

3. 地方財定法施行令 第30條 第5號내지 第11號에서 정하는 書類

②市長은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의 歲入歲出豫算, 繼續費, 明示移越費와 債務負擔行爲에 관한 豫算을 編成한다. 특히, 事業豫算編成의 경우 中長期 財政運營計劃에 의거 可用財源範圍內에서 事業의 優先順位와 關聯 效果를 綜合的으로 檢討하여 編成하여야 한다.

第4條(豫算案 提出등)①市長은 第3條에 의한 豫算案을 每會計年度 開始 40日前까지 서울特別市議會(이하 “市議會”라 한다)에 提出하여야 한다.

②市長은 豫算案 提出後 부득이한 事由로 인하여 그 內容을 修正하고자 할 때에는

修正豫算案을 提出할 수 있다.

第5條(豫算 不成立時의 豫算執行)市議會에서 부득이한 사경으로 會計年度 開始前까지 豫算案이 議決되지 못한 때에는 市長은 다음 각호의 經費를 前年度 豫算에 準하여 執行할 수 있다.

1. 法令이나 條例에 의하여 설치된 機關 또는 施設의 유지 운영
2. 法令 또는 條例上 支出義務의 履行
3. 이미 豫算으로 承認된 事業의 繼續

第6條(施行規則) 이 條例 施行에 關하여 필요한 事項은 規則으로 定한다.

附 則

이 條例는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.

○委員長 朴尙東 서울特別市條例및規則公布에 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에 對해서 異議가 없으십니까?

(「네」 하는 委員 있음)

可決된 것을 宣布합니다.

(議事棒 3打)

(參 照)

서울特別市條例및規則公布에關한條例中 改正條例案

서울特別市條例와規則公布에關한條例中 다음 과 같이 改正한다.

第3條중 “國務總理의 承認을 얻은”을 “서울特別市議會의 議決을 얻은”으로 한다.

第4條 “다만 規則이 國務總理의 承認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明기하여야 한다”를 削除한다.

附 則

이 條例는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.

○委員長 朴尙東 市政開發研究院育成條例案에 對해서 우리가 開陳을 많이 하셨는데 이 案에 對해서 委員님들 異議가 없으시죠?

(「質疑하나 하겠습니까.」하는 委員 있음)

네, 補充만 조금해 주십시오.

○金炯奎委員 民主黨의 金炯奎입니다.

서울特別市市政開發研究院育成條例입니다. 대충은 제가 內容을 알겠습니다만 이것을 좀 確實하게 整理를 할 必要性이 있어서 묻겠습니다. 目的에 가서 이 條例는 巨大都市化에 따른 都市問題와 서울特別市 行政에 필요한 諸般政策 課題를 體系的으로 調查 研究하기 위하여 設定된 財團法人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條例에 있는 巨大都市化에 따른 都市關係가 뒤에 말하는 서울特別市하고 聯關되는 겁니까? 다시 말하자면 이 서울特別市 市政開發이 서울시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餘他的 未來指向인 立場에서 巨大都市까지 포함이 되는 것인지 그 與否를 말하는 것입니다.

○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앞에 目的에 나와 있는 巨大都市化에 따른 都市問題와 서울特別市와의 關係는 서울特別市라는 그 概念속에 巨大都市가 包含이 됩니다. 그런데 다만 서울特別市가 巨大都市化 되는 그러한 것을 前提로 해서 서울特別市를 보는 그런 立場을 갖다 정리한 것이지요.

○金炯奎委員 그러면 굳이 巨大都市化에 따른 都市問題 이것은 말하자면 言語가 필요없는 것 아니겠어요. 文字가 필요없는 것 아니에요? 서울特別市 行政의……

○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, 그것은 金委員님 말씀이 맞습니다. 있어도 좋고, 없어도 좋은 것인데 저희가 用語를 整理하다 보니까……

○金炯奎委員 제가 이것을 質問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서울特別市를 중심으로 해서 衛星化 되어 있는 다른 廣域의 都市까지에 대한 문제를 研究檢討하는 것인지, 반드시 서울特別市만 하는 것인지 그 명확한…… 우리가 育成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이 필요해서 물었습니다. 그러면 이 條例는 서울特別市 行政에 필요한 諸般의 政策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?

○企劃管理室長 朴宗雨 그렇습니다.

○金炯奎委員 “巨大都市에 따른 問題와” 이